총신대학교 대의원총회 총신대학교 학생자치회칙

학생복지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총신 대학교 학생 복지 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원 내의 업체 및 기타 기관들로부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주의를 지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실현과 학우들의 협동적인 복지생활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선거)

제1항 학생복지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

제2항 추천받은 회원은 위원장의 결정과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과 조건)

제1항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총신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제2항 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재학생만 포함한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의 해당 학기도 가능하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정회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항 준회원: 시설 및 기구들의 관리의 의무와 사용의 권한을 지닌다. 단, 본인의 담당 시간일 때에만 적용한다.

제2장 총회 및 회의

제6조 (구성)

제1항 "회원의 자격과 조건" 중 '정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항 '준위원'은 회의에 참관은 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7조 (지위)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제8조 (역할)

제1항 본회의 회칙을 제청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제2항 해당 년도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결한다.

제9조 (소집)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항 정기회의: 매 주 한 번 소집한다.

제2항 임시회의: 위원장의 필요와 재적 인원 1/2의 동의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재적 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동의 시 의결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 대의원총회 총신대학교 학생자치회칙

제3장 위원장

제11조 (지위)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정기회의,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권한과 의무)

제1항 본회의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지닌다.

제2항 본회의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부위원장 및 각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제4항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선출)

제1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한다.

제2항 본교의 학생으로서 3 학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3항 본회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4항 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5항 위원장은 학복위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상임위원회의 인준에 의해 임명 된다.

제14조 (임기)

제1항 위원장 및 회원들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말까지로 한다.

제2항 회원들의 임기 내에 사퇴하게 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5조 (경비)

제1항 복지기금: 매점, 서점, 복사실, 미용실, 자판기 등의 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항 자체기금: 사물함 및 기타 판매 수익금으로 한다.

제16조 (예산 및 결산)

제1항 복지기금: 총신대학교 기획과로부터 예산안 및 내역을 심의 받는다. 총신대학교 경리과로부터 결산안 및 영수증을 감사 받는다.

제2항 자체기금: 총신대학교 대의원회로부터 예산안 및 내역을 심의 받는다. 총신대학교 대의원회로부터 결산안 및 영수증을 감사 받는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 까지 1년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 (적용)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